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48
----------	-------

발의연월일 : 2018. 8. 27.

발의자 : 김성찬 · 이은권 · 주광덕  
정태옥 · 성일종 · 윤종필  
박덕흠 · 김승희 · 권성동  
윤영일 · 박맹우 · 최연혜  
강석진 · 원유철 · 유승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하여 사후에 추서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고, 사후 추서를 통해 다시 진급시켜 2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2계급 진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진급예정자 제도가 생긴 2001년 9월 1일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들이 1년

의 기간 동안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을 2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진급예정자를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진급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전사·순직진급예정자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서 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날을 진급예정일로 보아 진급한 것으로 보고,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다시 한 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진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진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7조).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진급예정자 제도가 신설된 2001년 9월 1일 이후 진급예정자가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의 진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급예정자”란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라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진급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전사자(「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를 말한다) 또는 순직자(「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를 말한다)로서 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할 예정이었던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급신청) 2001년 9월 1일 이후의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